<전 매체> 2022년 5월 17일(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과장 정의경(044-204-7821)	이호중 서기관(78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과장 설재진(044-202-6460)	김승열 사무관(6461)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총경 김종민(02-3150-2037)	경정 유지훈(2763)
	한국인터넷진흥원	탐지대응팀	팀장 김은성(02-405-5363)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관련 사기문자 · 전화 주의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등 정책지원을 **사칭**한 **사기문자·전화**가 증가하여 주의 필요

□ **손실보전금**은 국회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이 확정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공고·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경찰청**(청장 김창룡),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문자** 및 **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정책지원 대상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은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추경안 통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누리집(사이트)을 개설**하고 공고 및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이 사기문자·전화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사기문자·전화는 이용중지 조치**하는 동시에 **문자 발송자·발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이호중 서기관(☎ 044-204-78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기문자 발송 예시

금년도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 지원 안내 공고

[Web발신]
(광고)대상자알림

안녕하세요. 고객님
귀하께서는 『정책지원 매출 감소별 손실보상 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지급 확정 대상자로 선정되어 마감 전 재안내드립니다.

본 문자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정책지원자금 이용자 역시 추가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미신청 대상자에게 재안내 목적으로 발송되었으며, 문자 수신 대상자께서는 이번 지원된 예산 조기 소진 예정으로 인해 22.05.18(수) 16시까지 신청 마감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약 332만명
- 일반근로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 기존 재난지원 신청자 약 250만명(추가 지원)
- 신규 신청자 약 120만명

■지원정책 추가사항 안내.
-지원혜택: 무담보, 저금리, 장기상환, 보증지원, 신속지급.
-지원자금: 경영안정, 일상회복, 고용안정,
-용도별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용점수·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신속 지급
-임차료, 임금체불(급여지급), 긴급생계, 전·월세 보증금, 자녀 학자금, 의료, 장례 등

■온라인(전자 약정) 신청 안내.
-신청기한: 2022년 5월 18일(수) 16시까지
-필요서류: 무서류 접수(최종 가결 시 필요서류 요청)
※ 예산 초과 및 신청 마감일 이후 추가 신청건에 대해서는 부지급 처리.

【유의사항】
① 위법 및 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유관기관 등에 통보됩니다.
②금융사는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상담센터
-상담전화: 1533-1478
-상담시간: 09:00~16:00(토, 일, 공휴일 제외)
※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정책자금별 특징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무료거부080-156-7160

붙임2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예시

□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문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결과 안내]

[Web 발신]

귀 사업장이 신청한 확인보상 결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결과 조회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입력하여 접속 → "신청결과 확인"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결과 확인

○ 문의전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및 관할 시·군·구청 전담창구를 통해 보상금 결과 확인 후, 세부적인 보상금 산출 결과 등에 대해서는 관할 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 신청결과 안내]

[Web 발신]

귀 사업장이 신청한 확인요청 결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시·군·구청 전담창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한 결과 확인에 동의하거나 서면통지(시스템을 통한 결과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결과 상세조회 및 이의신청 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입력하여 접속 → "신청결과 확인"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통지방식 동의 여부 선택 → 결과 확인(시스템 상 결과 동의 시만 바로 가능) → 이의신청

○ 문의전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전용사이트 메인화면